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0일, 이재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2.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3. 0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재정의원)

현행법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현행 폐업일로부터 7일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30일----------.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으로 안전·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약품제조업 폐업 후 7일 이내[1]) 등 특별한 경우에만 7일의 신고기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 7일의 기한은 상당히 짧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2] 특히 업계 특성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아 생계로 인한 폐업신고 기한 준수의 어려움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음.[3]

이에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안전 등과 관계되지 않은 사업의 폐업신고 등은 그 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추세라는 점[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폐업은 국민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30일 이내로 폐업신고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 **「약사법」 제40조(폐업 등의 신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2)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 폐업 2개월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10.10.)」에서 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 연장을 규제혁신 과제로 추진한 바 있음.

4) 영화업,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제작업 등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2.28.)됨에 따라 7일에서 30일로 연장됨.

참고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사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업 등의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규정한 입법례]

법률명	관련 조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소위원장)

원안가결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3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